

전형별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

□ 1차전형 합격자 【100점 만점+(가점)】

- 1차전형 점수 + 가점 고득점순으로 1차전형 합격자를 선발
 - * 가점은 유리한 하나만 적용 가능하며, 법률상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초과할 수 있음
 - ** 단, 가점사항이 여러 개로 법률상 가점과 중복 적용되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가점을 나중에 반영함

□ 최종 합격예정자 【100점 만점+(법률상 가점)】

- 2차전형 점수 + 가점 고득점 순
 - * 법률상 가점을 부여할 경우 만점을 초과할 수 있음

□ 입사후보자 제도 운영

-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발생한 선발단위의 최종 합격예정자 결정 순위에 따른 차순위자를 3일 이내 추가합격 조치 가능
 - 최종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'20. 11. 09.까지 입사 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붙임5
 - 인턴 근무자가 '20. 11. 12. 이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
 -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

【 입사 포기 확인서 미제출,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】

입사 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,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확인서 없이 입사 포기 처리 후 차순위자에게 입사 기회 부여

- 근무일이 사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확인서 제출 없이 공지된 입사 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
-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, 의사 표시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

□ 전형단계별 동점자 처리기준

- (1차전형 동점자) 법률상가점자 → 특별가점자
 - 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
- (최종 합격예정 동점자) 법률상가점자 → 특별가점자 → 1차전형 점수
 - 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
 - ** 1차전형 점수는 가점 포함 점수

※ 모든 점수는 각 단계별 소수점 셋째짜리 이하 절사